



2024. 12. 02.(월) 10:00

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운 영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윤 선 기

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발의년월일: 2024. 11. 13.
- 발 의 자: 이진환 의원 등 8인

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 부재로 장기 연임 시 부패 발생의 우려가 있고,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(제5조 1항)
 - 자문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 마련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 : 2024. 11. 13. ~ 11. 19.(6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동 개정 조례안의 자문위원 연임 제한 규정은 부패 가능성을 줄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고,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정책 개발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왕은선